

소 장

- 원고
1. 오 의 군
 2. 김 선 응
 3. 박 정 숙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순, 이 찬진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6층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희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송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셈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서원합등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6층 대표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 오의균은 소외 동양증권(주)에 1992. 12. 경 입사하였고, 원고 김선응은 소외 (주) 제일기획에 91. 12. 1.에 입사하였으며, 원고 박정숙은 (주) 한겨레신문에 90. 12. 3.에 입사하였는바, 위 각 회사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전단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원고들은 각기 사업장가입자로서 매 월 돈 26,000원, 17,400원, 15,000원 상당을 기여금 및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하는 각출로조로 소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 및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위

(1)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정하면서, 같은법 제2조에서는 국민연금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며, 보사회장관은 국민연금사업중 가입자에 대한 관리, 각출료 징수, 급여결정,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를 위탁하게 하며(법제22, 23조),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6층 대포 ● 대표전화: 525-3660 ● 팩스: 525-3663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상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직접 이를 관리, 운영하되 그 운영 방식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다 등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방법으로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법 제82조 제1항, 83조)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에 취임한 소외 서상목 등 원고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을 역임한 소외인들은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자신의 소속 행정기관장인 소외인들을 관장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2) 이상과 같은 점에서 소외 서상목등 현임 및 전임 보사회장관인 소외인들은 원고들 등 모든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인들이 각출하여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을 가입자들에게 최대한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운영, 관리 하여야 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같은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인들의 원고등에 대한 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위와같은 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서 그 의무는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 감독자로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

(1) 기금의 형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각출료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6층 대로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적립금과 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되는바(법제82조 제2항), 결국 국민연금은 그 공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관철되어 그 수익자인 가입자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로 기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수익율

법 제83조 제3항 및 이에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수익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실 태

그럼에도 1994. 8. 10. 발행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간의 "1993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게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은 별표 제1과 같은 바, 93년 말 기준으로 총기금 8조 4246억원 상당중 본래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금융부분 운용액은 4조 1418억원 상당임에 비하여 ^공공부문은 3조 800억원, 복지부문은 3900억원 등으로 45%이상의 금액이 현재의 정기예금이자율을 훨씬 하회하는 낮은 수익을 얻는 공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율 현황은 별표 2와 같은 바, ⁹³년도 기준 금융부분의 수익율 평균은 14.63%임에 반하여 공공부문은 9.79%에 불과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93년도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1%의 이자율에도 훨씬 하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운용으로 말미암아 93년도 한해만 하여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6층 대포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공공부문의 금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수익률 차이로 무려 1058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별표 3 참조)

더구나 이러한 점은 금융부문 중에서 회사채나 금전신탁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훨씬 더 막대한 수익손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별표 2 참조)

이로인한 과도한 공공부문에 대한 저리의 기금운용으로 말미암아 기금조성 후 93년도까지 무려 2300억원 상당의 수익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상 정부인 피고2가 이를 무한히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률상 국가재정에 의하여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므로 이와같은 법령에 위배된 방만한 운영은 결국 원고 등 연금가입자들에게 장차 연금 급여의 지급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하나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도 2020년 이후에는 적자 및 재정파탄이 명확하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같은 기금의 파행적인 운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인 소외인들뿐 아니라 위 기금을 임의로 예산에 무단전용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위 기금의 관리, 운용책임자인 보사부장관들의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예산 편성 및 재정자금 전용 등 불법 전용행위를 조장 및 방관하고, 원고 등 가입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이를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앞서 본 바와같은 위 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기금 수익상의 손실에 대하여 소속 공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재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포) ● 대표전화: 525-3660 ● 팩스: 525-3663

무원인 용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위 기금을 전용함으로써 그 손해를 미친 잘못으로 인한 위 기금수익손실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 등이 조성한 위 기금에 대한 법률상의 관리의무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금을 전용함으로써 원고 등 가입자 등에게 앞서 본 금액 상당의 운영상의 손실 및 장차 도래할 기금 파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감독책임자의 지위 및 자신의 불법 전용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연금가입자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장차 연금 급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등을 초래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손해액은 두후 확정키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일응 돈 3,500,000원을 청구키로 하겠습니까.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기 위 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분의 셈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6층 대도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1. 강제1호증의1,2 1993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표지 및 내용
1. 기타 번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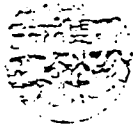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1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위 입 장 | 1통 |

1994. 12. 5.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변호사 이 찬 진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서원합등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 대표전화: 525-3660 ● 팩스: 525-3663